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의결안건 제248호 관련)

2021. 11.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30~18:4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48호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코너스톤네트웍스는 공정가치를 측정했을 때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했는데 공정가치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규정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회사 및 감사인은 경영참여의 목적의 경우에는 경영권프리미엄도 공정가치 측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린 주장인지? 경영참여 목적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시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기준서 제1113호에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예외사항이 세 가지 있지만 해당 社는 동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음. 그리고 주식을 취득할 때와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여지가 있겠지만 평가의 시점에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음.

- (위원) 그런데 ○○회계법인은 ○○○의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는 관련된 대상 회사 자체가 현저하게 미미하여 사용가치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음. 그렇지만 (주)코너스톤네트웍스는 사용가치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음.
- (위원) 감리위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시 프리미엄을 포함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회계법인의 '중과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과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증선위 안전에는 동기판단 사유를 수정하여 상정하겠음'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된 것인지? ○○○ 말고도 몇 군데 회사, 공정가치에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버리면 앞으로 경영권 부분을 공정가치에서 인정 안 해 주겠다는 전례가 되어 버리는 것임.
- (보고자) 기준서에서는 활성시장에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론도출 근거에도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증이나 할인을 포함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래서 감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셨지만 기준서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셨고 다만 동기판단부분을 조금 수정하자는 의견이 강해서 그렇게 안전을 정리한 것임.
- (위원) 감리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그대로 읽어보면 '공정가치

의 경우 개별주식은 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종속기업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가격(p)x수량(q)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회계단위가 종속기업 전체라면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금감원 답변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사용가치 계산시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회계기준상 순공정가치 계산 시 적용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영권프리미엄을 사용가치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음. 그리고 두 번째, 아무튼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종속기업 주식을 그냥 단순 개별주식 가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활성시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찾아서 평가를 할 것이냐는 이슈가 있음. 결과적으로 동기판단사유를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서 주식 기재를 안 했고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데 그 부분도 주식 기재 안 했고 그다음에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검토 위반 등으로 '중과실'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음. 그래서 여전히 공정가치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반영할 수가 없음.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기준원에 문의를 하여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태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재를 하면 좋을 것 같음. 실제로 통보한 제재조치 사유와 지금 약간 다른데, 그러면 과연 그 정도 이루어진 것이 '중과실 II단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됨.

- (보고자) 기준원에도 구두질의를 한 결과 저희와 동일한 답

변을 얻었고 감리위 심의의견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 부분임. 그리고 회계범위를 종속기업 전체로 보는 경우, 거래시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될 수도 있겠지만 평가시에는 기준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음.

- (보고자) 감리위에서 논의된 것을 설명 드리면, 감리위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님. 위원님들 간에도 회계단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활성시장이 아니라 비활성시장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이 동일한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는데 단위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금감원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님.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 공정가치 평가시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지 말고 개별주식 가격으로 하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버린 것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관행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 그리고 감사인이 공정가치에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것을 먼저 제시했다고 얘기했는데 감사인이 지도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절차위반으로 '중과실'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
- (위원) 감리위에서 원안의결을 하되, 위반동기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취지로 기억함.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권프리미엄 반영과 관련하여 이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기업회계팀과 상의해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정책적인 측면도 아울러 감안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